

자동차 보험 유형별 보상 사례

김 희 중

〈한국자동차보험(주) 지점장〉

한 밤 중에 가족중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겨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마침 본인 소유의 승용차는 고장이 나서 정비 공장에 수리를 맡겨 두었기 때문에 이웃집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여야 할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불행히도 이웃집 승용차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소위 오너 드라이브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 보험의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웃집 사람에게 직접 운전까지 해 주도록 부탁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본인이 운전하고 갔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친구와 함께 휴일날 지방으로 낚시를 하러 떠나는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 승용차는 집에 두고, 친구 소유 승용차만을 가지고 떠났다고 하자. 장거리 운전에 친구가 피곤하다 하여 대신 운전을 하여 도와주고 싶은데, 친구 소유 승용차는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하고 있어서, 만일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 보험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을 도와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상과 같이, 종합 보험에 가입

한 본인의 승용차를 수리 등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다른 승용차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라든지, 장거리 운전시 친구 소유 승용차를 교대로 운전하여야 할 경우에 다른 자동차가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든지(무보험), 또는 오너 드라이브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본인이 운전을 하면 종합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종합 보험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Needs)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된 보험 상품이 타차 운전 특약 보험이다.

1. 타차 운전 특약 보험의 성격

원래 자동차 보험은 보험 사고 위험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상, 자동차 1대를 단위로 하여 보험료, 보험금액, 보험기간 등을 약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한 특정한 사고에 대하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그 자동차가 일반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그 보험의 소위 허락 피보험자(보험 가입자의 승락을 받아 사용하는 자)로서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

하고 운전할 수 있지만, 다른 자동차가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든지(무보험), 오너 드라이브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다른 자동차를 짧은 기간 동안 가입도록 하든지, 오너 드라이브 보험을 일반 종합 보험으로 보험 종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긴급히 다른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다른 자동차가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나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보험 가입자가 다른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없애고, 동시에 그러한 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종래 보험에 가입한 특정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그 자동차의 사고만을 보상한다는 대원칙을 깨고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야기되는 자동차 사고에 까지 보험 보호를 확장한 것이 타차 운전 특약 보험이다.

2. 타차 운전 특약 보험의 한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차 운전 특약 보험이 보험에 가입한 본인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그 자동차가 무보험인 경우까

지)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한 보험이지만,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1대의 보험료를 받고 2대 이상의 자동차의 사고 위험까지 보상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승용차 2대를 한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중 1대는 자기 명의로 등록한 후 타차 운전 특약 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1대는 부인 명의로 등록한 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타차 운전 특약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불합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타차 운전 특약 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운전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의 범위를 엄격히 재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 제한의 일반적 기준은 다른 자동차의 사용 형태가 피보험 자동차 자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부득이한 다른 자동차의 사용이라는 범위 내로 제한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다른 자동차가 가족 소유 자동차라든지, 회사 소유 자동차라든지, 또는 타인 소유 승용차라 하더라도 평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되어 그 승용차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등은 이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례 I〉

식당을 경영하는 친한 이웃끼리 평소 시장에 가서 음식 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각각 이웃 식당의 승용차



보험 상태라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례 II〉

를 제한없이 사용하여 왔다. 이 경우 타차 운전 특약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웃 식당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대인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 차량은 보험 가입자의 소유 차량은 아니지만, 평소 제한없이 그 승용차를 자주 사용하여 왔다면 그 자동차는 타차 운전 특약 보험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례 III〉

타차 운전 특약 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이 직장 동료와 밤늦게까지 근무한 후, 그 동료가 집에 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을 하여 회사(주식회사)소유 승용차를 꺼내어 집으로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다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이 경우, 사고 운전자는 타차 운전한 경우에는 이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회사 소유 승용차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고 당시 차량의 사용이 회사의 승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 소유 승용차의 종합 보험에 의한 보상 유무가 결정된다.

따라서 회사 소유 승용차가 무

타차 운전 특약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친구와 함께 시끌로 뉘시를 가지고 있었다. 오너 드라이브 종합 보험(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한 친구 소유 승용차를 교대 운전 하던 중, 반대 방향의 화물차와 충돌, 친구 소유 승용차가 파손된 경우(차량 손해)

이 경우에는 타차 운전 특약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에 속하지만, 이 보험의 보상 범위는 대인 배상(다른 사람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과 대물 배상(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물건을 파손케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정되고, 자차 손해(차량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례 IV〉

타차 운전 특약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가 일시적으로 타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야기한 경우, 구체적인 보상 처리 과정 및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1. 본인 소유 승용차의 계약 내용 : 종합 보험 대인 배상과 타차 운전 특약 보험
2. 타인 소유 승용차의 계약 내용 :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대인 배상)
3. 피해 내용 : 사망 1명인 경우 본인 소유 승용차가 가입한 종합 보험(대인 배상)에 의한 보상 금액이 7천만원이라면, 그 금액에서 타인 소유 승용차가 가입한 책임 보험(강제 보험)에 의한 사망 보험금액 5백만원을 공제한 6천5백만원이 이 보험에 의한 지급보험금으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다. ●